

타워크레인 대여계약 통보서

공사명	
임대인 (건설기계 사업자)	상호 및 대표자
	사업자등록번호
	영업소 소재지
임차인 (건설사업 자)	상호 및 대표자
	업종 및 등록번호
	영업소 소재지
대여계약 내용	도급액 ① 타워크레인 부분
	대여계약(예정)금액
	② 대여율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68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타워크레인 대여계약내용을 통보합니다.

년 월 일

수급인

(서명 또는 인)

귀하

붙임서류	1.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(변경계약서를 포함합니다) 사본 2.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
------	--

유의사항

- 타워크레인 부분 금액은 임차하려는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.
- 대여율은 대여계약금액을 타워크레인 부분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.

처리절차

통보서 작성·제출 건설사업자	→	접 수 발주자(담당부서)	→	통보내용 확인 (적정성) 발주자(담당부서)	→	결 재 발주자(담당부서)
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